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일 변경 알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시행일 변경 안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라, 품목별로 상이했던 표시 적용 시점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수입신고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품목: 당류 및 식용유지류
- 적용 시점(선적일 기준): '27.12.31. → '26.12.31. (간장과 동일)

* 개정고시(안)은 우리 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식품표시광고 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지시 관련문의 :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 1436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검사 관련 정보→증명서 제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https://www.mfds.go.kr/seoul/index.do>)→소통알림→식품수입 길라잡이→검사정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보호조치 요구 방법

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전화 044-200-7773/팩스 044-200-7949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